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4. 7. 3.>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別紙第37号書式] <改正2024年7月3日>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裏面の必要書類と届出の案内、留意事項をよく読んで記入し、[] 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표면)

<p>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m²] 건물 외부 장소 [m²]</p> <p>営業所の面積: 建物内部の場所 [m²] 建物外部の場所 [m²]</p> <p>영업장의 소재지:</p> <p>営業所の所在地:</p> <p>※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p> <p>※ 建物外部の場所の面積は、「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項イ. の休憩飲食店営業、同号ロ. の一般飲食店営業、又は同号ハ. の製菓店営業を営もうとする者が、当該外部の場所で飲食物等を提供する場合にのみ記入します。</p>
--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飲食販売自動車を使用して休憩飲食店営業又は製菓店営業を営もうとする場合は、その営業所の面積を当該飲食販売自動車の自動車登録番号と共に建物内部の場所に記入し、当該営業所の所在地を記入します。	
식품용수의 종류	☐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食品製造用水の種類	☐ 水道水 ☐ 天然水 ☐ 塩地下水（塩分を多く含む飲用水）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地下水（天然水及び塩地下水は除く） ☐ 먹는해양심층수 ☐ 그 밖의 먹는물 ☐ 海洋深層水 ☐ その他の飲用水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食品製造用水を2種類以上使用する場合は、複数記入することができます。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해당 ☐ 미해당
シェアキッチンの使用の有無	☐ 該当 ☐ 該当なし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 해당 ☐ 미해당
共同調理場の利用の有無	☐ 該当 ☐ 該当なし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 共同調理場を共同で利用する営業所の名称、営業の種類及び所在地：	
식품자동판매기의 자동적인 혼합·처리 기능 여부	☐ 해당 ☐ 미해당
食品自動販売機の自動的混合・処理機能の有無	☐ 該当 ☐ 該当なし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食品衛生法」第37条第4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42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通り営業を届け出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고인
届出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長・郡守・区庁長 殿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担当公務員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同意しない場合は、関連書類を申請人本人が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고인(대표자) 届出人（代表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신 고 안 내 届出のご案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長・郡守・区庁長への届出を必要とする業種>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냉장업 10.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용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 即席販売製造・加工業 2. 食品運搬業 3. 食品の小分け業 4. 食用氷販売業 5. 食品自動販売機営業 6. 流通専門販売業
7. 集団給食施設の食品販売業 8. その他の食品販売業 9. 食品冷凍・冷蔵業
10. 容器・包装類製造業（自らの製品を包装するために容器・包装類を製造する場合は除く） 11. 陶器類製造業
12. 休憩飲食店営業 13. 一般飲食店営業 14. 委託給食営業 15. 製菓店営業

유의사항 留 意 事 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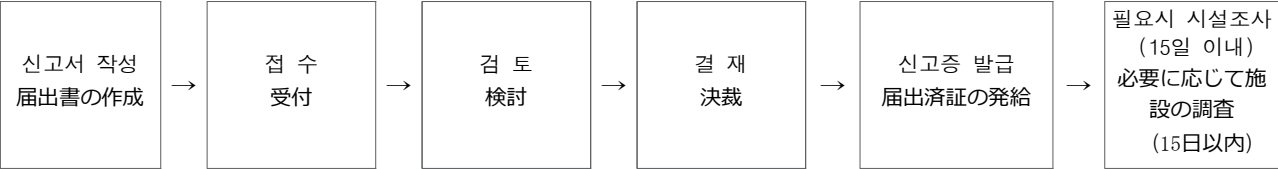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届出をした営業を廃業する際にも届出が必要になります。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 届出を必要とする業種の届出を行わずに営業を営む場合は、「食品衛生法」第97条第1号に基づき3年以下の懲役又は3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されます。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3. 営業の届出をする者は、「食品衛生法施行規則」第40条において定める事項の他に、当該営業の届出に関連する以下の法令に違反又は抵触するか否かを検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 「国土の計画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下水道法」、「農地法」、「学校保健法」、「屋外広告物等の管理と屋外広告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河川法」、「漢江水系上水源の水質改善及び住民支援等に関する法律」、「水環境保全法」、「騒音・振動管理法」、「観光振興法」、「塾の設立・運営及び課外教習に関する法律」、「青少年保護法」、「勤労基準法」、「産業集積の活性化及び工場設立に関する法律」、「駐車場法」、「地方税法」等、その他の関連法令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2)라)에 따라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食品衛生法施行規則」別表14第8号イ. 2) 二. に基づき、共同調理場を使用する場合は、共同で使用する調理場の面積を含めて届出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제출서류 提出書類	<p>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p> <p>1. 教育履修証1部 (「食品衛生法」第41条第2項に基づき、予め教育を受けた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p> <p>2. 製造・加工しようとする食品の類型及び製造方法に関する説明書1部 (「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2号に定める営業のみ該当します。)</p> <p>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p> <p>3. 施設使用契約書1部 (食品運搬業を営もうとする場合で、車庫又は洗車場を賃貸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4. 「飲用水管理法」により飲用水の水質検査機関が発行した水質検査(試験)成績書1部 (水道水ではない地下水等を、飲用水又は食品等の製造過程や、食品の調理・洗浄等に使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5. 遊船又は渡船事業免許証又は届出済証1部 (水上構造物からなる遊船場又は渡船場に「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同号ロ. の一般飲食店営業及び同号ハ. の製菓店営業を営も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6. 食品自動販売機の種類及び設置場所が記載された書類1部 (2台以上の食品自動販売機を設置して管理番号を付与し、一括で届出を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7. 水上レジャー事業登録証1部 (水上構造物からなる水上レジャー事業所において、「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及び同号ハ. の製菓店営業を営も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8. 「国有財産法施行規則」第14条第3項による国有財産使用許可書1部 (国有鉄道の停車場施設又は軍事施設において、「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2号の即席販売製造・加工業の営業、同条第5号の食品の小分け・販売業の営業、同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同号ロ. の一般飲食店営業及び同号ハ. の製菓店営業を営も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9. 当該都市鉄道事業者と締結した都市鉄道施設使用契約に関する書類1部 (都市鉄道の停車場施設において、「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2号の即席販売製造・加工業の営業、同条第5号の食品の小分け・販売業の営業、同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同号ロ. の一般飲食店営業又は同号ハ. の製菓店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10. 予備軍食堂運営契約に関する書類1部 (軍事施設において「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ロ. の一般飲食店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11.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11. 営業所と連接する外部の場所を営業所として使用する場合は、当該外部の場所に対して正当な使用権限が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 (「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同号ロ. の一般飲食店営業又は同号ハ. の製菓店営業を営もうとする者が、当該外部の場所で飲食物等を提供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수수료 手数料</p> <p>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28,000ウォン (収入印紙又 は収入証紙)</p>
--------------	---	--

	<p>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12. 当該営業所で営業できることを証明する「食品衛生法施行規則」別表15の2による書類1部〔飲食販売自動車（「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別表1第1号・第2号及び備考第1号イ. による移動型飲食販売用途である小型・軽型貨物自動車、又は同表第2号による移動用飲食販売用途である特殊作業型特殊自動車）を使って、「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又は同号へ. の製菓店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13. 「児童遊戯施設安全管理法」第12条第1項及び同法施行令第7条第4項による児童遊戯施設の設置検査合格証又は「児童遊戯施設安全管理法」第12条第2項及び同法施行令第8条第5項による児童遊戯施設の定期施設検査合格証（「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ロ. ホ. 又はへ. の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で、当該営業所に児童遊戯施設を設置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p> <p>14. シェアキッチンの所在地、面積等が記載されたシェアキッチンの使用契約に関する書類（「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9号のシェアキッチン運営業者のシェアキッチンを使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15. 「マリナ港湾の造成及び管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第22条第5項に基づくマリナ船舶レンタル業登録証（「マリナ港湾の造成及び管理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マリナ船舶で「マリナ港湾の造成及び管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21条第8号イ. 、ロ. 又はへ. に基づく営業をしよ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担当公務員 確認事項</p>	<p>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1. 土地利用計画確認書（「食品衛生法施行規則」第42条第1項第10号による国有財産使用許可書を提出した場合を除きます。）</p> <p>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2. 建築物台帳又は「建築法」第22条第3項第2号による建築物の臨時使用承認書（「食品衛生法施行規則」第42条第1項第10号による国有財産使用許可書を提出した場合を除きます。）</p> <p>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p> <p>3. 液化石油ガス使用施設完成検査証明書（「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同号ロ. の一般飲食店営業及び同号へ. の製菓店営業を行おうとする者のうち、「液化石油ガスの安全管理及び事業法」第44条第2項に基づき、液化石油ガス使用施設の完成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者の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4. 自動車登録証（飲食販売自動車を使用し「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又は同号へ. の製菓店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5. 事業者登録証（飲食販売自動車を使用し、「高等教育法」第2条に基づく学校で当該学校の経営者が「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8号イ. の休憩飲食店営業又は同号へ. の製菓店営業を営も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p> <p>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p> <p>6. 健康診断結果書（第49条に基づく健康診断対象者の場合のみ該当します。）</p>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多数利用営業所の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第9条第5項に基づき、消防本部長又は消防署長が発給する安全施設等の完備証明書（「多数利用営業所の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施行令」第2条第1号イ.による営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	

처리절차
処理の流れ



신고인
届出人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処理機関 : 特別自治市・特別自治道・市・郡・区 (食品営業届出担当部署)